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_별지

2025. 08

이륜자동차보험

1. 보험의 종류 : 자동차보험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이륜자동차보험

3. 보험 가입대상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인 이류자동차

4.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

가. 자동차

나.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에 관한 피보험이익

다.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

5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가. 통신판매를 통한 직접 판매(TM)

6. 보험기간,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납입주기 가.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: 1년만기, 2년만기 및 3년만기 나. 보험료납입주기: 일시납

7.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8.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9. 특약에 관한 사항

보통약관에 첨부할 특약은 다음과 같다.

|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 별약관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 관 | | |
| 벌금비용(스쿨존확대형) 특별 약관 | 형사합의금 특별약관 |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|
|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|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|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 해 특별약관 |
|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 담보 특별약관 |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 관 | 나눔(서민우대) 특별약관 |
|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|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|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 약관 |
| 대인·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 관 | 차량용 영상기록장치(블랙박 스) 할인 특별약관 |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|

10. 기타 사항

- 가.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·할증적용등급(률)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나.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%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
- 다.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관련 제출서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만 활용하고, 보험의 인수심사, 보험금 심사 혹은 요율산출 등 다른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는다.